

『가상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매출채권관리 솔루션』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전자금융상품에 의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전자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가상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매출채권관리 솔루션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개요

□ 상품명: 가상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매출채권관리 솔루션

상품특징: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자금 집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함께 고객의 보유 예금계좌를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위한 상품으로써, 시중은행에 HSBC 모계좌를 개설하고 가상계좌 이용 서비스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고객에게 분배하고, 고객의 지급인들이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입금된 자금은 거래은행의 HSBC 모계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의 주거래 은행인 HSBC의 고객 계좌로 집금 처리됨으로써 고객의 수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상품입니다.

2. 거래조건

□ 거래조건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가상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매출채권관리 솔루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구분	내용
가입대상	법인
부대비용	- 본 계약과 관련된 서비스 수수료는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거래방법	- 신규 : 서울지점 영업점 - 해지 : 서울지점 영업점
계약의 해지	고객은 1개월 이전에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제휴서비스	해당 없음
유의사항	- 고객이 전자금융업자일 경우 은행이 제공한 가상계좌를 타 업체에 할당하여 관리를 대행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한 가상계좌는 고객의 소유로서, 고객의 지급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지급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은 반드시 가상계좌서비스 실행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고객의 지급인에게 안내해야합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방법	서울지점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담당심사역(RM), 고객관리담당자 또는 상품판매시 상담직원(부서: \_\_\_\_\_, 성명: \_\_\_\_\_, 전화번호: 02-2004-\_\_\_\_\_)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